

인천시 검단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8. 20.]

■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9.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과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영구임대주택(서창1단지, 갈산2단지, 검단AA19블록)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8.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정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가능)
-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순번은 기존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복지주택(검단35-2BL 26B(주거약자)형)은 **만65세 이상(1961.08.20.이전 출생)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	건설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인천 검단	AA-5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로3로 49(당하동, 인천검단 LH13단지)	250호 '22.11
	AA10-2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1로 420(원당동, 인천검단 LH26단지)	298호 '24.02
	AA35-2블록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57 (당하동, 인천검단 LH38단지)	490호 '25.08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호수	세대당 계약면적(m²)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		합계	현재공가호수	대기중인예비자	금회모집예비자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검단13 AA-5	26B (주거약자)	52	26.31	14.0387	2.6333	10.4086	53.3906	3	19	20	1302, 1303	철근콘크리트 / 지역난방
검단26 AA10-2	26Ab (주거약자)	56	26.11	15.7591	2.8123	11.6241	56.3055	6	25	20	2604 ~2606	
검단38 AA35-2	26A,C	37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56	1	70	3802,3804, 3805,3806 3807	
	26B (고령자복지주택)	120	26.53	14.8579	2.8489	10.1779	54.4147	13	1	60	3801	

- 금회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호수는 향후 기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로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형별 평면도(구조)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된 팸플릿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신청이 불가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인천광역시내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전 형별(26B, 26Ab, 26A,C, 주거약자형 포함)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설치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고령자복지주택**에는 안전손잡이(현관, 욕실), 욕실 접이식 의자, 욕실 출입문규격확대(박여단 이), 야간센서등(욕실입구하부), 비상연락장치(거실, 욕실), 동체감지기(거실)이 일괄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를 위해 추가로 설치된 품목은 철거가 불가합니다.

단지	편의시설 설치내역
검단13 AA-5블록(주거약자용)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출입문 규격 확대, 욕실출입문 밖여닫이, 욕실 비상콜, 욕실 내 좌식의자, 야간센서등
검단26 AA10-2(주거약자용)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접이식의자, 욕실출입문 규격확대, 비상연락장치, 거실 동체감지기, 야간센서등(욕실입구하부),
검단38 AA35-2(고령자복지주택)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접이식의자, 욕실 출입문 확대(밖여닫이),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등

■ 임대조건 ※신청자력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이 적용됨

단지	형별	적용 구분	기본 임대조건(원)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검단13 AA-5	26B (주거약자)	「가」군	2,640,000	132,000	2,508,000	52,590	(+) 4,000,000	6,640,000	32,590
						(-) 1,000,000	1,640,000	55,500	
		「나」군	15,674,000	783,700	14,890,300	106,350	(+) 12,000,000	27,674,000	46,350
						(-) 12,000,000	3,674,000	141,350	
검단26 AA10-2	26Ab (주거약자)	「가」군	2,733,000	136,650	2,596,350	54,440	(+) 4,000,000	6,733,000	34,440
						(-) 1,000,000	1,733,000	57,350	
		「나」군	16,411,000	820,550	15,590,450	125,230	(+) 15,000,000	31,411,000	50,230
						(-) 12,000,000	4,411,000	160,230	
검단38 AA35-2	26A,C	「가」군	2,772,000	138,600	2,633,400	55,200	(+) 5,000,000	7,772,000	30,200
						(-) 1,000,000	1,772,000	58,110	
		「나」군	18,898,000	944,900	17,953,100	143,940	(+) 17,000,000	35,898,000	58,940
						(-) 14,000,000	4,898,000	184,770	
	26B (고령자복지 주택)	「가」군	2,772,000	138,600	2,633,400	55,200	(+) 5,000,000	7,772,000	30,200
						(-) 1,000,000	1,772,000	58,110	
		「나」군	18,898,000	944,900	17,953,100	143,940	(+) 17,000,000	35,898,000	58,940
						(-) 14,000,000	4,898,000	184,77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 각 주택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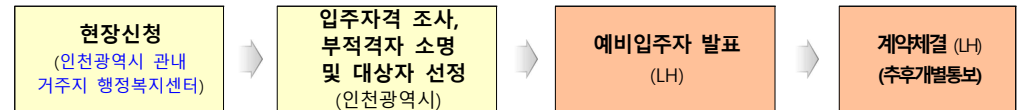
3.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안내
2026.08.31.(월) ~09.02.(수)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접수만 가능	2026.12.03.(목) (17:00이후)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개별안내

- *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금회 모집하는 주택(검단13단지, 검단26단지, 검단38단지)과 같은 날 접수하는 다른 인천광역시 관내 영구 임대주택(서창1단지, 갈산2단지, 검단AA19블록)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만→국민, 영구→영구, 행복→행복, 통합공임→통합공임)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서명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만65세 이상(1961.08.20.(포함)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부양하여야 하는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td><td></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border="1"> <tbody> <tr> <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 <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tr> </tbody> </table>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대표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이 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퇴거완료)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용 적용대상(적용비용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용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용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자산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용 적용대상(적용비용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용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우대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가구원수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금액	
차. 일반입주자	1인	0인	70%	245,000,000	45,420,000
		0인	6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70%	270,000,000	49,960,000
		0인	5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6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70%	294,000,000	54,510,000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1인	0인	90%	245,000,000	45,420,000
		0인	8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90%	270,000,000	49,960,000
		0인	7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8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90%	294,000,000	54,510,000
타. 장애인(2순위)	1인	0인	120%	245,000,000	45,420,000
		0인	110%	245,000,000	45,420,000
	2인	1인	120%	270,000,000	49,960,000
		0인	100%	245,000,000	45,420,000
	3인 이상	1인	110%	270,000,000	49,960,000
		2인 이상	120%	294,000,000	54,510,000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 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00%	110%	12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3,813,363	4,194,699	4,576,036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5,866,270	6,452,897	7,039,524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8,168,429	8,985,272	9,802,115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8,802,202	9,682,422	10,562,64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9,326,985	10,259,684	11,192,382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9,906,263	10,896,889	11,887,516
7인	5,242,771	6,291,325	7,339,879	8,388,433	9,436,987	10,485,541	11,534,095	12,582,649
8인	5,532,410	6,638,891	7,745,373	8,851,855	9,958,337	11,064,819	12,171,301	13,277,78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901,057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70,000,000원, 자동차가액 49,960,000원을 적용

* 세대원수에 포함되는 범위

구 분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분리배우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에 한함
	• 태아	

○ 소득·자산 확인 및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여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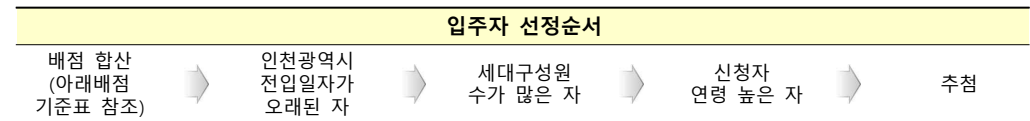
■ 일반공급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기준]

구분		배점 100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사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24	
	5년 이상 ~ 10년 미만	26	
	10년 이상 ~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
	만40세이상 ~ 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 ~ 만60세 미만	23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포함) (30점)	만60세 이상	2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1 ~ 2인	24	
	3인	26	
	4인	28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5인 이상	30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5 (유형 3가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5-2.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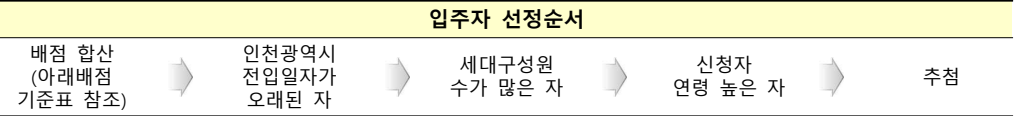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가목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유공자 등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유공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군
	마.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계		9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2. 신청자 연령 (2점)	만 70세 이상	2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	
3. 세대구성원 수	2인 이상 (신청자 본인 포함)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동거인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익일 이후 등재된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1인은 0점에 해당)
4. 장애정도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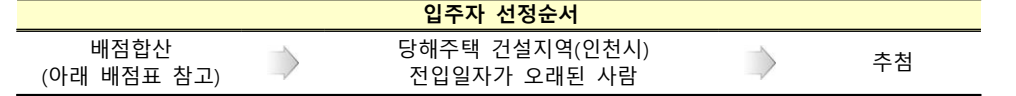
5-3.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 (검단AA35-2BL 26B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 건설되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만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 자격 순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신청 자격 (65세 이상)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 70%(1인90%, 2인 80%)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3순위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신청자)
①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4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② 단독세대주 여부	단독세대주	3	공고일 현재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신청자 연령	만75세 이상	3	공고일 현재 기준
	만70세 이상 ~ 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1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	* 인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최근 전입일자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구비서류		내 용	발급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1-1호 또는 1-2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대기자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대상자 : 영구임대주택 신청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작성 및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4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 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①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②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③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5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신청자 전원 제출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행정복지 센터
해 당 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 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행정복지 센터
	혼인관계서류	<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제출 > • 신혼부부인 경우 :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6세이하 자녀가 있음을 증명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행정복지 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6-1-6-2호서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 발급가능, 반드시 제출)	공사양식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 신청자격 증명서」 확인필수)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 증명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시증 사본	국방부

7.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6.12.03.(목) 17: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약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등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자산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신청 자격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 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선정 이후 신청 당시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경·통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유의사항																
주택 소유 금지 및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함.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자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따른 단지별 주차가능대수<table border="1"><thead><tr><th>단지명</th><th>건설호수</th><th>주차대수</th><th>비고</th></tr></thead><tbody><tr><td>AA5블록</td><td>250세대</td><td>678대</td><td>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750세대)</td></tr><tr><td>AA10-2블록</td><td>298세대</td><td>792대</td><td>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854세대)</td></tr><tr><td>AA35-2블록</td><td>490세대</td><td>653대</td><td>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593세대)</td></tr></tbody></table>	단지명	건설호수	주차대수	비고	AA5블록	250세대	678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750세대)	AA10-2블록	298세대	792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854세대)	AA35-2블록	490세대	653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593세대)
단지명	건설호수	주차대수	비고														
AA5블록	250세대	678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750세대)														
AA10-2블록	298세대	792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854세대)														
AA35-2블록	490세대	653대	국민임대 혼합단지(국민 건설호수 593세대)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 본 단지는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을 운영하지 않으며, 팸플릿을 참고하여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신청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지특성 자세한 사항은 최초모집공고문 참조)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 계약자는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계약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검단 AA-5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한진중공업(602-81-42993) 풍창건설(주)(122-81-35486) 대명산업개발(주)(412-81-10656) 외 3개업체	-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아이티엔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인천검단 AA10-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214-81-89369] 봉림종합건설(주) [131-81-64568] 대륙전기(주) [610-81-37846] 외 4개업체	-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엔씨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인천검단 AA35-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대광건설 (410-81-74561) 외 4개업체	-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5개사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만 해당)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 주거약자용 주택 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14. 장애인의 장애의 정도 구분 참고)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방향 조정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층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축산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원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문의처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20.



[별지 1-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일반)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검단AA35-2BL(검단38단지)	주택형	26A,C(통합)형	가구원수 (태아포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만65세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주택 및 자산 현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1-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지자체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구분		배점 100점	특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시 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시 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 이상~5년 미만	24		
	5년 이상~10년 미만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포함) (30점)	만60세 이상	25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1~2인	24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유형8: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입주자중복신청불가사항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 1-2]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공급신청서 (앞면, 신청자작성)

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주택형		가구원수 (태아포함)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음.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 자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1-2]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공급신청서 (뒷면, 지자체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주거약자용 주택)				
구 분		배점 9	특점	배점기준(대상자)
1.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점)	10년 이상	3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5년 이상~10년 미만	2		
	1년 이상~5년 미만	1		
2. 신청자 연령(2점)	만 70세이상	2		▶ 만 나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1		
3.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1점)		1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공급신청자 포함)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인은 0점에 해당)
4. 장애정도 (3점)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입주자중복신청불가사항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별지 1-3] 영구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신청서 (앞면, 신청자작성)

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 신청 유형	단지명	검단AA35-2BL (검단38단지)	주택형	26B형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집 전 화()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입주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80%)이하 국가유공자 등인 자 ☐ (3순위)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				
배점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 아래 배점을 합산한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동일점수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 선정				
		① 장기요양등급 ☐ 3등급(4점) ☐ 4등급(3점) ☐ 5등급(2점) ☐ 인지기원등급(1점) - 공고일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단독세대주 ☐ 단독세대주(3점)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사람				
		③ 연령배점 ☐ 만75세이상(3점) ☐ 만70세이상~만75세미만(2점) ☐ 만65세이상~만70세미만(1점) - 신청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령 기준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1년 이상 3년 미만(1점)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1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격제한자(불법양도·전대)없음]에 해당함을 ☐ 서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 확인하며,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신청시 기재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배우자 ☐ 기타대리인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인천광역시장 귀하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특점 (고령자복지주책)				
구 분		배점	특점	배점기준(대상자)
		14		
1. 장기요양등급 (4점)	3등급 이상	4		▶ 신청자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7조제1항 3호~6호
	4등급	3		
	5등급	2		
	인지지원등급	1		
2. 단독세대주 여부(3점)	단독세대주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사람
3. 신청자 연령(3점)	만75세 이상	3		▶ 만 나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 이상~만75세 미만	2		
	만65세 이상~만70세 미만	1		
4.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3점)	5년 이상	3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인천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최근 전입일자 기준)
	3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1		
5. 사회취약계층 여부(1점)	사회취약계층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총점		점	_____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 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사향확인서 ☐ 개인정보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배우자 포함)은 (신 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고를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됨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함

2026 년 1월 1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지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권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정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지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앞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7.>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세대전화번호		
본인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별지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뒷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별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해당철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6-1]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제출)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신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각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인 (1) : 대표신청인 • 성명 : _____ • 주민등록상주소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 신청인 (2) :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연락처 : _____	
구분	동의
공동신청	☐ 상기 신청인 (1), (2)는 (신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정보·금융정보	☐ 상기 신청인 (1), (2)는 (신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 상기 신청인 (1), (2)는 (신청 단 지 명)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6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신청단지명)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교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각 구성원의 비교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분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2026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인천광역시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위임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임내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u>신청단지명</u>)영구임대주택(신청 /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신청, 계약 중 해당란에 ○표			

2026 년 월 일

위임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사본